

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4. 2.

1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 자격검증 강화를 위한 위원 선정방식 개정(안 제8조제1항, 제8조제1항제1호, 제8조제1항제2호, 제8조제3항, 제9조제3항)
-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반영(안 제14조제1항, 제20조제1항, 제21조제1항, 제24조제3항)
- 동의 행정적 지원 관련 규정 신설(안 제22조의2)
- 주민자치협의회 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확대(안 제23조의2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안 제8조는 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공개추첨방식

및 선발방식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, 이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,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(공개 추천하거나 선발한다)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돼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민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※ 【참고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※ 【참고】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

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발한다. 다만,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(※ 지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음)